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11월 28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9일

3. 제안사유

- 충북의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정착을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,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정의를 개정 및 추가함(안 제2조).
- 나. 시행계획의 평가 포함(안 제6조).
- 다.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에 양성평등 정책 평가 및 성주류화 조치 추진실적 점검사항 포함(안 제7조).
- 라.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수 및 당연직 위원 확대(안 제8조).
 - 위원수: 20명→30명
 - 당연직 위원: 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 → 기획, 행정, 경제, 복지, 문화, 여성 등 업무 담당 실·국장
- 마. 정기회 개최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(안 제10조).
- 바. 실무위원회 구성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-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전국 시·도별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, 4개 등급 중 충북은 중하위권(3등급) 수준에 그치고 있음.
 - 특히 8개 분야별로 17개 광역시·도의 순위를 보면, 충북은 경제활동 분야만 우수하고 △의사결정 10위 △교육직업훈련 11위 △복지 8위 △보건 13위 △안전 10위 △문화·정보 10위로 성평등지수가 중하위권에 머물렀고,
 - 또한, 전국조사(2016양성평등 실태조사) 결과 62.6%가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반면, 충북 조사(2018)에서는 응답자의 71.7%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함.
-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15일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로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, 일부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(정의)에는 “성차별”, “성희롱”, “양성평등 관련 법령”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함.
- 안 제6조는, 5년 단위로 작성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대해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이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시 피드백(feedback)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,

- 안 제7조는,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▲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·협력 및 평가 ▲충청북도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실적점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.
- 안 제8조는,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
 - 위원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,
 - 당연직 위원을 현행 기획관리실장, 여성정책관에서 기획, 행정, 경제, 복지, 문화, 여성 등의 업무 담당 실·국장으로 개정함.
- 안 제10조 또한,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, 임시회 소집 조건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를 추가함.
- 안 제11조는,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·조정·자문·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규정함.
- 안 제12조는,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음.
- 안 제16조는,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제53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, 법률 인용조항을 성인지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로 개정함.
 - ※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(성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안 제19조는, 도정 참여에 있어 양성평등 확보를 위해
 - 제3항에 “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” 를 신설함.

- 이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※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안 제22조는, 현행 제20조를 삭제하고, 성매매 범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규정하였고, 안 제23조((모·부성의 권리 보장), 안 제24조(여성의 복지증진), 안 제25조(건강증진), 안 제28조(양성평등 교육)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
○ 안 제33조는, 기금 운용과 관련해 지원금을 현행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된 것을 삭제하여 필요에 따른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임.

※ 양성평등기금 조성액('19): 6,736,049천원

○ 안 제42조는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, 구성, 회의 등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과 일부 문구 및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, 내용상 문제가 없음.

○ 또한,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, 절차상 토론회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.